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1. 인증기관의 업무범위 등 (안 제17조의2)

가. 개정 이유

- 물막이설비의 설치 대상지역 및 건축물 등에 대하여 「자연재해대책법」과 「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에서 규정하고 있으나, 각 제도에서 상이하게 운영 중인 대상지역 및 건축물 등을 일치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나. 개정 내용

- 물막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규모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서 연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건축물로,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는 「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」 제15조제2호마목에 따른 “행정안전부장관이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지역”으로 자연재해대책법과 통일시키고자 함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기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물막이설비의 설치 대상지역 및 건축물 등에 대하여 「자연재해대책법」과 「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에서 상이하게 운영 중인 대상지역 및 건축물 등을 통일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○ 특기사항 없음